

의안 번호	2475	【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 : 2025. 10. 2.(목)
- 제출자 : 이명녀 의원 외 6명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0. 2.(목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0. 16.(목)

2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경로당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에서 여가를 보내는 어르신을 위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-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지원 대상 및 범위, 지원 기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안 제6조)
- 지도·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지원금의 지급 중지 및 반환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4. 근거법규

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, 제36조, 제37조
-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6조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제정 취지

- 본 조례안은 상시적으로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, 여가활동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은 수행하고 있으나, 이용정원 부족 또는 시설기준 미비 등으로 경로당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 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임

나. 상위법령 위반여부 검토

- 「노인복지법」 제37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는 경로당의 등록 요건으로 이용정원과 시설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
-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예산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
- 「조례안제의결무효확인」 대법원 판례(2017.9.21., 2016추5186)*에 따르면 「노인복지법」의 제정목적이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의 기여함에 있고, 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 따라, 조례의 제정목적이 상위 법령인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고 동일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면 조례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

*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(2016.9.7.)

다. 종합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시적으로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, 여가활동 등 경로당의 기능은 수행하고 있으나 경로당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
- 미등록 경로당의 난립 우려를 예방하고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최대 3년까지 하되, 지원기간 내 등록 경로당으로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법적지원 범위 안으로 들어오도록 규정하고 있음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근거법규

「노인복지법」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

1. 노인복지관 :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·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2. 경로당 :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3. 노인교실 :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·노인건강유지·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4. 삭제

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·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

제26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)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
②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.

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표 7]

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(제26조제1항 관련)

1. 시설의 규모

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가. 노인복지관 :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

나. 경로당 : 이용정원 20명 이상(섬 또는 읍·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)

다. 노인교실 : 이용정원 50명 이상

2. 시설기준

구분 시설별	사무실	식당 및 조리실	상담 실 또는 면회실	집회 실 또는 강당	프로그 램 실	화장 실	물리 치료 실	비상 해 대 시설	거실 또는 휴게실	전기 시설	강의 실	휴게 실	객실	공동 목욕 장	기타 부 대 시설
노인 복지관	1	1	1	1	1	1	1	1							
경로당						1			1	1					
노인 교실	1					1					1	1			

3. 설비기준

시설의 종류 구분	노인복지관	경로당	노인교실
설비기준	가. 식당 및 조리실: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,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. 나. 프로그램실 :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 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해야 한다. 다. 물리치료실 : 기능회복 또	가. 거실 또는 휴게실 :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	가. 강의실 :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
	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		
--	---	--	--

4. 직원의 자격기준

직종별	자격기준
노인복지관 시설장	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

5. 직원의 배치기준

시설별	직종별						
	시설의 장	사회복지사	강사(외부 강사 포함)	물리 치료사	사무원	조리원	관리인
노인복지관	1명	2명 이상		1명	1명	1명	1명
노인교실	1명		1명				

비고

노인복지관에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약의사(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)를 둘 수 있다.